본 경정결정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18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2 민사부

결 정

사 건 2017카경9 판결경정

신 청 인 A

피 신 청 인 1. 대한민국
2. 울산광역시 중구청
3. 울산광역시 남구청
4. 울산광역시 북구청
5. 경주시

주 문

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5가합3170 압류등기말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'N'에서 'O'로 경정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7. 1. 17.

재 판 장 판 사 **한경근**

판 사 **김성은**

판 사 **최민혜**